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이 진 환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이진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문화콘텐츠산업은 비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의 대표주자로, 달서구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, 이에 따라,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

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【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34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3.

발의자 : 이진환 박왕규 김장관
김정희 고명숙 장호섭
정창근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문화콘텐츠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(안 제4조)
- 다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라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1
 -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
- 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문화콘텐츠산업”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문화콘텐츠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·장기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경비를

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
2.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
3.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)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
3.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·연구사업의 지원,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 콘텐츠산업 진흥법

제3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,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,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